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579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김세현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상덕, 이종범

변론 종결2022. 12. 1.

판결 선고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7. 24.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200,000,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춘천지방법원 2020카정100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791호로 공탁된 1,500,000,000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200,000,100원 부분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정증서 등

원고는 2019. 10. 29. 및 2019. 11. 14.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채무자로, C,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D, C, E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019. 10.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800호	D, 1,400,000,000원 (2020. 4. 28.)	C, E, 1,400,000,000원
2019. 11.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845호	D, 200,000,000원 (2020. 2. 28.)	C, E, 200,000,000원

나.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춘천시 G 일원에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건축된 위 숙박시설 등을 '이 사건 사업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 H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20년 제189호로 H가 2020. 4. 1. C에게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8.까지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C가 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H가 2020. 4. 29.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J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K 주식회사'이다. 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사업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운영경비·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자(춘천지방법원 2020타채690), C는 2020. 5. 25. H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723,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청구사건'이라 한다).

3) C는 2020. 5. 25. 위와 같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2020카정10010,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7. 2. C에게 위 신청사건의 피신청인 H를 위한 담보로 2,000,000,000원을 공탁하되,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4) C는 2020. 7. 23.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액 50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 2020년 금제791호로 1,500,000,000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공탁신청을 하였다. 이에 C는 2020. 7. 24. J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0. 10. 23.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위 공탁신청에 따라 발급된 가상계좌로 공탁금 1,50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791호로 공탁된 1,500,000,0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5) C는 2020. 7.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M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통지서로서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20. 7. 24.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제1조(목적)

C는 춘천지방법원 2020카정10010 사건의 담보 제공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도대상 채권)

C는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2020카정10010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취소)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791호로 공탁한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한다.

6) 위 법원은 2020. 7. 28. H를 위한 담보로 위와 같은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이 사건 공탁금을 제출받고 위 2) 기재와 같은 H의 춘천지방법원 2020타채69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21. 4. 30. 이 사건 공정증서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800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21. 6. 23.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1타채13473). 위 법원이 2021. 6.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21. 7. 1.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7. 7.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집행해제통지서가 2021. 7. 12.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C가 H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1. 18. C의 청구를 인용하여, H의 C에 대한 집행권원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20년 증서 제1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다.

3) C는 2022. 2. 7.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카담5), 위 법원은 2022. 2. 14.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2. 3.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합계 1,60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인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감소시켜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청구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200,000,100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중 위 금액 부분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 1)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다수의 이 사건 사업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감정평가액이 합계 31,212,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 C가 H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 청구사건(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723) 및 압류명령의 취소를 위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춘천지방법원 2020카정10010)을 각 제기하면서, 당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관계로, 그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차용하고, 이후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무자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일반채권자들과 무관하게 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C의 총재산에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C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재판상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그대로 양도하였던 것인바, C의 총재산에 대한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C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수탁자로 관여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C의 공탁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탁금 가상계좌에 1,50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여하였으며, 달리 C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제공 원인이 되었던 C의 H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청구사건에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C는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판사유철희

판사정희림

별지